

#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홈페이지 운영지침

2022년 5월 18일 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운영자 및 관리자)** 홈페이지 운영자는 본부지부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전임으로 하며, 홈페이지 사업지원을 위해 사무처장을 관리자로 한다.

### 제4조(운영원칙)

-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보장
- 표현의 자유보장
-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및 사생활 보호
-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

## 제 2 장 이용과 권리

### 제5조(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)

#### ① 이용자의 권리

- 조합원만 이용권리를 가진다.
- 조합원이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이용자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제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#### ② 이용자의 책임

-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아이디(ID)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. 단,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기재한(해킹 등) 경우 자료를 즉시 폐기 하며, 아이디(ID) 관리책임은 아이디(ID) 소유자에게 있다.
- 아이디(ID)를 공유하여 자료나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서 사용한다는

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혀야 하며,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,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아이디(ID) 소유자로 한다.

**제6조(이용자의 정보관리)** 조합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시 취득한 개인정보(아이디(ID), 이름, 사번, 주소, E-mail, 핸드폰번호)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
1.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  2.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,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고하여야 한다.
  3.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, 수정,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4.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.
  5. 제공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는 삭제한다.
  6.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되면 복구 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.
- 다만, 업무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관 자료항목을 사전에 공지 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, 사전 공지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 3 장 게시판의 운영

**제7조(게시판의 정의)** 게시판이라 함은 홈페이지 상에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을 말하며, 게시판은 참여마당과 자료마당으로 구분한다.

1. 참여마당 :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자유게시판, 힘희롱·성희롱 신고센터로 구분한다. 단, 힘희롱·성희롱 신고센터의 글쓰기만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“비밀글 사용”으로 설정한다.
2. 자료마당 : 자료의 축적과 배포를 위해 개설한 게시판을 말하며 회의자료(운영위), 대대자료, 영상자료, 사진자료로 구분한다.

**제8조(게시판의 폐쇄)** 자유게시판의 운영에 대한 일시중지와 폐쇄는 운영자가 게시판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, 위원 2/3 출석과 2/3 찬성으로 결의하여 집행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이 때 폐쇄된 게시板的 보관은 제15조에 준한다.

**제9조(게시물의 수정과 삭제)**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. 이때 게시물이 있던 자리에는 삭제(이동) 사실과 이유를 게시하고 이의 절차를 안내한다.

1. 상업적광고 : 노동조합에서 인정하는 노동운동관련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
2. 명의도용 게시물 : 개인 및 단체의 이름 및 게시글을 도용한 경우에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
3. 중복게시물 : 동일내용 및 반복적 내용을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경우

4. 판독할 수 없는 자료 :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
5. 성 및 인권보호에 위반되는 게시물 :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,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, 언어폭력적인 게시물
6. 공인 및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, 조직의 단결을 심히 저해할 정도의 허위·비방적 내용을 포함, 진위가 파악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
7. 위 제6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게시판 운영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는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삭제 후 원본을 보관하며, 차후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신분이 확인 된 게시물은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 이전까지는 삭제하지 아니한다.
8. 기타 게시물의 내용에 상업적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바이러스가 포함된 경우 등

## 제 4 장 게시판 운영위원회

**제10조(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설치)** ① 게시판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게시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 및 운영자는 당연직으로 한다. 또한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중 4인을 선출하고,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 제2항의 위원의 별도로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.

④ 제9조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작성자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경우에는 작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전체 성원으로 한다.

⑤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출석 할 수 있다.

### 제11조(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)

① 제9조 1, 2, 3, 5호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

② 제9조 6, 7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

③ 게시판 운영위원 1/3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
④ 게시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

⑤ 제9조에 따른 사안 발생 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.

⑥ 위 제1항, 제2항의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에 게시물의 복구, 삭제 혹은 수정할 것을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2조(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운영)**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운영 사업

의 목적이 민주적인 의사소통임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알권리, 발언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홈페이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삭제 또는 수정을 결정하거나, 제6조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 $\frac{2}{3}$ 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 $\frac{2}{3}$ 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이미 삭제 또는 수정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하며,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.
2.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하며,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.

## 제 5 장 이의절차

**제13조(이의신청)** ①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삭제·수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, 삭제·수정의 기준일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삭제·수정한 날로 한다.

② 이의신청은 유선통화 후 사내 메신저, 게시판, E-mail, 팩스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이의신청 처리절차)** ①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료지부 운영위원회에 하며, 이의신청에 대해 의료지부 운영위원회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조정·결정 한다.

② 의료지부 운영위원회는 3주 이내로 결정하고 이를 공지한다.

## 제 6 장 자료의 보관

**제15조(자료의 관리)** ① 운영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·전제 할 수 있다. 단,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.

③ 게시판의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2년간 저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아니하다.

④ 게시물은 보관기간 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운영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1년 주기로 장기 보관 장치(CD, 외장하드 등)를 통

해 별도로 보관하여 한다. 또한 자료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과 홈페이지 운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부 칙

제1조(통상관례) 이 지침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제2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